Issue Report

Vol. 2018-지역이슈-1 (2018. 6. 14)

해외경제연구소

미국의 이란 핵협정(JCPOA) 파기 이후 동향과 이란 및 중동 정세 전망

Ⅰ. 트럼프 미 대통령, 이란 핵협정(JCPOA) 일방적 파기 ····· 1

Ⅱ. 미 재무부의 대 이란 경제제재 복원 일정 발표 ····· 7

Ⅲ. 유럽 기업들, 미국의 제재 부활로 이란에서 철수 검토 ····· 9

Ⅳ. 미국, JCPOA 파기에 이어 고강도 대 이란 제재 선언 ····· 12

Ⅴ. 향후 전망 ····· 16

작성 : 선임조사역 오경일 (3779-6664)
oki1122@koreaexim.go.kr

한국수출입은행
THE EXPORT-IMPORT BANK OF KOREA

요 약

Ⅰ. 트럼프 미 대통령, 이란 핵협정(JCPOA)의 일방적 파기 선언

□ **트럼프 대통령, 5월 8일 JCPOA 파기 및 Secondary Sanction 부활 선언**

○ 트럼프 대통령은 다자간 협정인 JCPOA의 여타 참가국은 물론 미 행정부와 의회 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5월 8일 JCPOA 파기 및 핵협정 탈퇴를 선언

○ 미 재무부는 JCPOA 파기에 이어 이란과 거래하는 제3국 기업, 개인에 대해서도 제재를 가하는 Secondary Sanction의 전면 부활을 발표

□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핵개발에 대한 제한 영구화 요구**

○ JCPOA는 미국의 대 이란 제재조치의 일몰 조항을 포함하고 있으며, 미국은 일몰조항 폐지를 통한 이란의 항구적인 비핵화를 요구

□ **이란은 여타 당사국들과 함께 JCPOA 준수를 천명**

○ 트럼프 대통령의 JCPOA 파기 선언 직후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은 이란이 여타 당사국들과 함께 JCPOA를 계속 준수할 것이라고 발표

□ **이스라엘과 사우디아라비아의 요구도 미국의 JCPOA 파기의 배후**

○ 중동 지역에서 미국의 핵심 동맹이자 이란과 앙숙 관계인 양국은 이란에 대한 견제를 위해 상호 협력 강화

Ⅱ. 미 재무부의 대 이란 경제제재 복원 일정 발표

□ **JCPOA 파기로 Secondary Sanction을 포함한 대 이란 경제제재 부활**

○ 트럼프 대통령의 JCPOA 파기 선언에 이어 미 재무부는 대 이란 경제제재 복원 일정 공개

○ 이란과 거래하는 제3국의 기업, 개인에 대해 제재를 가하는 Secondary Sanction도 전면 부활 예정

□ **대 이란 경제제재 1차 복원 : 8월 6일 (JCPOA 파기 선언 90일 후)**

○ 금융, 국채 발행, 금속제품 무역, 자동차 및 그 부품 무역 등에 대한 제재

□ **대 이란 경제제재 2차 복원 : 11월 4일 (JCPOA 파기 선언 180일 후)**

○ 해운, 석유/에너지 부문, 해상보험 및 재보험 등에 대한 제재

요 약

Ⅲ. 유럽 기업들, 미국의 Secondary Sanction 부활로 이란에서 철수 검토

□ **프랑스 Total社, 미국의 Secondary Sanction 압박으로 이란 South Pars 가스전 사업 철수 시사**

○ Secondary Sanction 적용은 Total社의 전 세계 영업과 미국 내 주주 및 사업의 상실로 이어져 이란에서의 철수 불가피

□ **Total社의 결정은 이란에 진출한 외국 기업들의 사업 유지 여부 결정은 물론 JCPOA 유지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

○ 주요 해운사들은 물론 은행, 자동차, 철도, 에너지 부문 유럽 기업들도 이란에서의 사업 철수 결정

○ 유럽 기업들이 Secondary Sanction 예외를 인정받지 못하면 EU는 JCPOA를 계속 유지할 동인(動因)이 상실되어 JCPOA의 붕괴를 초래할 가능성

Ⅳ. 미국, JCPOA 파기에 이어 고강도의 대 이란 제재 선언

□ **폼페이오 장관, 이란에 "플랜 B" 제시하며 역대 최강의 제재 부과 위협**

○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12가지 요구사항을 담은 새로운 합의(플랜 B)의 체결을 이란에 요구하며 "역대 최강의 재정적 압박"을 가하겠다고 위협

□ **미국 보수 강경파의 궁극적 목표는 이란의 체제 교체 및 친미 정권 수립**

○ 미국의 압박은 기대와는 달리 이란 내부의 결속력 강화로 이어질 전망이며, 무리한 이란 체제 교체 시도는 중동 지역에서의 전쟁 발발의 위험을 높일 것으로 우려

Ⅴ. 향후 전망

□ **중동 전역의 정치·경제적 불확실성 고조 및 세계 경제에 악영향 전망**

○ 미국의 JCPOA 파기는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 증폭 ⇨ 국제유가 급등 ⇨ 개도국들을 중심으로 하는 세계 경제에 대한 악영향으로 이어져 세계경기 회복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전망

□ **우리 기업들도 대 이란 사업 전면 재검토 불가피**

○ 미국의 대 이란 경제제재 복원 일정에 맞추어 기존 거래의 정리, 대금 회수 등 각종 조치 불가피

Ⅰ. 트럼프 미 대통령, 이란 핵협정(JCPOA)의 일방적 파기

1. 트럼프 미 대통령, JCPOA 파기와 대 이란 제재 부활 선언

□ 트럼프 대통령, 5월 8일 JCPOA 파기 및 제재 부활 선언

○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5월 8일(이하 현지시각) 이란과 P5+1(UN 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 및 독일) 간 타결된 이란 핵협상의 최종 합의문인 '포괄적 공동행동계획'(JCPOA)의 일방적 파기를 선언하고, 미국의 對이란 제재를 복원시키는 대통령 각서(presidential memorandum)에 서명하였음.

○ 2015년 7월 14일 이란과 P5+1 간에 핵협상이 타결된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JCPOA에 따라 미국의 핵 관련 4개 대 이란 제재법령[1] 적용을 정기적으로 유예하는 방식으로 대 이란 제재 해제를 유지해 왔음.

— 미 의회는 2015년 5월 이란 핵합의 재점검법(Iran Nuclear Agreement Review Act; INARA)을 제정, 미 행정부가 이란의 JCPOA 준수 여부를 매 90일마다 평가하여 의회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하였음. 즉, 행정부가 이란의 JCPOA 준수를 인증하면 의회는 대 이란 경제제재 적용 유예의 연장을 결정하는 체계를 구축하였음.

○ 트럼프 대통령은 2017.1.16자 취임 후 미 행정부가 JCPOA 이행일('16.1.16)로부터 대 이란 경제제재 법률의 적용을 2년 간 유예하는 Sanction Waiver에 서명하였으며, 이후 이란의 JCPOA 준수 여부를 인증하고 의회 앞 보고하였음.

— 트럼프 대통령은 1차('17.4.14자) 및 2차('17.7.16자) 보고시 이란의 JCPOA 준수를 인증하였으나, 3차('17.10.13자)는 인증 자체를 거부하였음.

— 이에 미 의회는 INARA에 따라 60일 내로 대 이란 경제제재 조치의 적용 재개 여부를 결정해야 하였으나, JCPOA의 파기를 바라지 않는 의회는 시한이 지나도록 조치를 취하지 않아 일단 적용 유예가 연장되었음.

— Sanction Waiver의 유효기간이 1월 16일자로 종료됨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이 4차 인증 거부시 미 의회의 별도 조치 없이도 1월 17일자로 제재조치 복원(Snapback)이 가능하였으나, 트럼프 대통령은 4차 인증 없이 1월 12일 제재조치 적용 유예의 연장을 발표하였음.

1) 이란제재법(ISA; 제재 유예 및 연장 가능기간은 최대 6개월), 이란 위협 감소 및 시리아 인권법(ITRSHRA; 최대 6개월), 국방수권법 2012(NDAA; 최대 120일), 이란 자유 및 反핵확산법(IFCA; 최대 120일).

글로벌 도약의 성공파트너, 한국수출입은행 오경일 | 2018-06-14 15:45

○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나 제재조치 유예의 연장을 발표하며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고 언급하고, 향후 120일 내 미국이 원하는 방향으로 JCPOA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JCPOA를 탈퇴하고 제재조치를 복원한다고 공언하였음.

○ JCPOA는 미국-이란 간 쌍방협정이 아닌 이란과 P5+1 간 다자간 협정이자 UN 안전보장이사회 의결을 거친 사안이나, 트럼프 대통령은 여타 참가국들은 물론 미 행정부와 의회 내의 반대도 무릅쓰고 결국 5월 8일 JCPOA 파기 및 핵협정 탈퇴를 선언하였음.

○ 트럼프 대통령은 JCPOA 파기를 반대해온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을 해임하고 대 이란 강경파인 마이크 폼페이오 CIA 국장을 후임으로 임명한 데 이어 존 볼턴 前UN 주재 대사를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에 임명하는 등 JCPOA 파기 및 미국 일방주의를 추구하고 있음.

— 유대계 혈통으로 적극적인 親이스라엘파이자 反중국 및 反이란파인 볼턴은 이란과 북한에 대해 핵무기에 의한 선제공격까지 주장하는 등, 군사행동을 선호하는 네오콘 진영 내에서조차 초강경파로 악명 높은 인물임.

JCPOA의 핵심 내용

□ **이란**은 향후 10년 간 우라늄 농축 재고량 감축(저농도 재고 상한 300㎏, 중간 농도는 보유 포기), 우라늄 농축용 원심분리기 대수 제한(1세대 6,104기), Arak 중수로의 설계 변경,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이란 군사시설 사찰 허용 등 **핵물질 관련 연구활동 제한 조치** 이행 : **핵무기 개발 활동의 전면 금지**

□ 미국, EU, UN은 재제해제 이행일 도래와 더불어 **대 이란 경제제재 조치 적용 유예(미국) 또는 해제(EU, UN)** 시행 : 2016.1.16자로 개시
⇨ 2025년 하반기 중 모든 대 이란 경제제재 조치 완전 폐기

○ 미 재무부는 JCPOA 파기에 이어 이란과 거래하는 제3국 기업, 개인에 대해서도 제재를 가하는 Secondary Sanction을 전면 부활시킨다고 발표하였음.

— 이는 필연적으로 EU, 러시아, 중국을 비롯한 여타 국가들의 반발을 초래할 것이며, 지나친 미국 일방주의에 대한 국제사회의 반감과 미국의 대외적 고립이 깊어질 전망임.

글로벌 도약의 성공파트너, 한국수출입은행 오경일 | 2018-06-14 15:45

○ 아울러 미국 정부가 최근 자국의 이익만을 앞세워 외국과의 양자간 합의(FTA 등)는 물론 여러 국가들이 참여한 국제적 차원의 다자간 합의도 일방적으로 파기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어, 국제사회에서 미국 정부의 대외적 신뢰도는 더욱 저하될 전망임.

2.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핵개발에 대한 제한 영구화 요구

□ JCPOA는 미국의 대 이란 제재조치의 일몰 조항을 포함

○ JCPOA에 의하면, 협상국 간 합의에 따른 JCPOA 효력 발생일인 Adoption Day('15.10.18)로부터 8년 후 IAEA에 의해 이란의 모든 핵물질이 평화적인 용도로만 사용되고 있음을 평가하는 Transition Day('23.7월 중 예상) 도래시 미국은 법률에 따른 제재의 '해제'를 위해 관련 법률의 개정 또는 폐기 조치를 이행해야 하며, 이는 미국의 대 이란 재제법률의 "일몰 조항"으로 작용함.

— 미국은 JCPOA에 따라 이행개시일로부터 기존 대 이란 제재법률의 적용을 '유예'하는 방식으로 제재를 완화하였으며(제제의 '해제'가 아님), 제재법률 자체는 개정 없이 8년 간 유지 후 JCPOA상의 "일몰 조항"에 따라 폐기[2]하게 됨.

— 미국은 Secondary Sanction[3]은 테러 지원 등을 제외하고 전 산업 영역에서 해제하였으나, Primary Sanction[4], 대 이란 거래에서 미 달러화 사용 금지, 탄도미사일 개발 및 인권침해 관련 제재는 계속 유지하고 있음.

○ Transition Day로부터 2년 후 대 이란 제재 관련 결의안이 '복귀되지 않고' 모든 제재가 해제됨을 선언하는 UN Termination Day('25.7월 중 예상)의 도래시 모든 對이란 제재조치가 완전 종료됨.

□ 미국은 일몰조항 폐지를 통한 이란의 항구적인 비핵화를 요구

○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대 이란 재제법률에 "일몰조항"으로 작용하는 JCPOA상의 내용 수정을 목표로 미 의회에 대해 다음의 요소들을 포함하는 법률의 제정을 촉구한 바 있음.

2) 다만, 행정명령에 의한 제재는 JCPOA 발효와 더불어 즉각 폐지/개정되었음.

3) 외국 국적의 개인·법인의 對이란 거래의 예외적 금지.

4) 미국 국적의 개인·법인·기관의 대 이란 거래의 일반적 금지.

글로벌 도약의 성공파트너, 한국수출입은행 오경일 | 2018-06-14 15:45

① JCPOA상의 이란의 핵 관련 활동 제한 영구화 : 이란의 불이행시 미국의 핵 관련 제재조치 즉각 복원
② 이란의 핵무기 획득 가능성 원천 차단
③ 국제 감시기구가 요구하는 이란 내의 모든 핵시설에 대한 즉각적 사찰 실시
④ 이란의 탄도미사일 개발·실험이 핵개발 프로그램과 불가분하며, 따라서 제재 대상임을 명시

○ JCPOA에 의하면 Transition Day로부터 5년 후(Adoption Day로부터 15년 후)인 2030년 이후에는 이란의 핵개발에 관한 각종 제약조건이 소멸됨에 따라 이란은 자유로운 핵개발이 가능해지며, 미국은 이를 막기 위해 일몰 조항의 폐지를 통한 이란의 핵개발 제한 영구화를 도모하고 있음.

○ 아울러 EU에 대해서는 JCPOA의 결점을 보완하는 영구적인 추가 합의 체결을 요구하고 있음. 이는 미국의 대 이란 경제제재 법률 일몰 조항의 폐지를 비롯하여 이란의 장거리 미사일 개발 및 실험, 핵사찰 거부, 핵무기 개발 등에 대한 새로운 다자간 제재를 도입하는 후속 합의를 이끌어내려는 의도임.

○ 미국 정부는 이러한 개정에 관한 협상의 대상자로 처음부터 이란은 물론 P5+1 중 이란의 동맹국들인 러시아와 중국도 배제하고 영국, 프랑스, 독일과 협상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음.[5)]

3. 이란을 비롯한 JCPOA 당사국들의 반응

□ 이란, 여타 당사국들과 함께 JCPOA 준수를 천명

○ 이란 정부는 자국 방위를 위한 탄도미사일 개발에 대한 제한까지 포함하는 방향으로의 JCPOA 개정은 명백한 내정 간섭이라며 반발하는 한편, 미국이 JCPOA를 파기하면 우라늄 농축 등 핵 관련 활동을 재개하겠다고 거듭 경고하고 있음.

— 당초 이란은 미국의 JCPOA 파기 위협에 대해 “여타 당사국들이 JCPOA의 유지를 지지하는 한 계속 JCPOA를 준수할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하였으나, 미국이 JCPOA를 파기하자 강경한 태도로 선회하였음.

5) 영국, 프랑스, 독일은 JCPOA의 유지를 위하여 트럼프 대통령과 이란 정부를 모두 설득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으나 결국 무위에 그쳤음.

글로벌 도약의 성공파트너, 한국수출입은행 오경일 | 2018-06-14 15:45

○ 이란의 하산 로하니 대통령은 4월 9일 “원자력의 날”에 대국민 연설을 통해 “미국이 JCPOA를 파기할 경우 미국, 이스라엘, 사우디아라비아는 1주일 내로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비난하였음.

— 앞서 3월 5일 이란 원자력청은 미국이 JCPOA를 파기할 경우 48시간 내로 농도 20%의 농축 우라늄 생산을 재개하겠다고 선언하였음. 이는 핵무기 제조에 즉각 사용될 수 있는 농도(90%)보다는 훨씬 낮지만, 발전용 우라늄 원료로 사용되는 농도(4~5%)보다는 월등히 높음.[6)]

○ 이란의 알리 샴카니 최고국가안보회의 사무총장은 4월 23일 국영방송과의 인터뷰를 통해 “미국이 JCPOA를 일방적으로 파기할 경우에 이란은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로 대응할 수 있다”고 경고하였음.

○ 그러나 로하니 대통령은 5월 7일 “미국이 JCPOA를 탈퇴해도 여타 당사국들(영국, 프랑스, 독일, 러시아, 중국)이 JCPOA의 유지를 원한다면 이란은 계속 JCPOA를 준수할 것”이라고 이전의 입장으로 돌아가는 발언을 하였음.

○ 5월 8일 트럼프 대통령이 JCPOA 파기를 선언한 직후 로하니 대통령은 방송 연설을 통해 이란은 여타 당사국들과 함께 JCPOA를 계속 준수한다고 발표하였음.

— 이란으로서는 JCPOA를 계속 준수함으로써 미국의 일방주의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판 여론을 환기시키는 한편, 이를 통해 미국 정부의 Secondary Sanction 부활에 대한 반대 여론을 조성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이익임.

— 다만, 로하니 대통령은 “필요하다면 제한 없이 산업용 우라늄 농축을 재개할 수 있다”고 덧붙여, 상황에 따라 핵 관련 활동을 재개할 여지도 있음을 암시하였음.

□ 이란 정부의 선택지는 제한적 : 어느 쪽이든 이란에 불리

○ 미국의 일방적 JCPOA 파기에 대한 이란의 대응방안은 ①현재 천명한 대로 여타 당사국들과 협력하여 JCPOA를 계속 유지하는 방안과 ②JCPOA의 완전한 효력 상실을 선언하고 핵개발을 재개하는 방안으로 나뉘어짐.

6) 이란은 JCPOA 타결 전까지 20%의 고농축 우라늄을 보유했으나, 2015년 7월 JCPOA 타결로 이를 희석하거나 천연 우라늄과 교환한 이후 현재는 JCPOA에 따라 최고농도 3.67%의 우라늄을 육불화우라늄(UF6)이나 다른 화합물의 형태로 300kg까지만 보유할 수 있음. 아울러 우라늄 농축용의 원심분리기 수도 JCPOA에 따라 약 19,000기에서 6,104기로 감축하였음.

○ 현재로서는 ①이 최선이나, 미국이 Secondary Sanction을 부활시킴에 따라 중국, 러시아 등 일부 국가들을 제외한 대다수 국가들과의 교역 및 투자 관계가 급격히 경색되어 경제에 악영향을 피할 수 없음.

○ ②의 경우는 사우디아라비아, 이스라엘 등 이란과 적대관계에 있는 주변국들로부터 강한 반발을 초래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들 국가들과의 직접적 무력 충돌로 비화될 위험을 증폭시킬 것임.

□ 여타 당사국들 : 이란과 더불어 JCPOA 준수를 계속한다고 발표

○ JCPOA 발효 전부터 이란과 우호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러시아와 중국은 미국의 JCPOA 준수 지속을 촉구하며, 미국의 일방적인 개정 요구에 반대하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음.

○ 반면 영국, 프랑스, 독일은 미국의 JCPOA 준수를 계속 촉구하되, 미국과 이란이 JCPOA 개정에 상호 합의하면 이를 존중한다는 태도를 취하며 양측에 합의를 거듭 촉구하였으나 결국 무위에 그쳤음.

○ 현재 여타 당사국들은 미국의 일방적인 JCPOA 파기에도 불구하고 이란과 더불어 JCPOA를 계속 준수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음.

□ 이스라엘과 사우디아라비아의 요구도 미국의 JCPOA 파기의 배후

○ 트럼프 대통령의 JCPOA 개정 요구의 배후에는 미국의 외교정책을 좌지우지하는 이스라엘은 물론 사우디아라비아의 요구도 크게 작용한 것으로 관측됨. 실제로 최근 양국은 기존의 적대관계를 뒤로 하고 '공동의 적' 이란을 견제코자 협력관계를 형성해 왔음.

— 중동 지역에서 미국의 핵심 동맹인 양국은 이란의 탄도미사일 개발 지속, 수니파와 시아파의 대립으로 인해 발생한 시리아 내전과 예멘 내전 등에서 이란의 개입 등으로 안보에 실질적인 위협을 느껴 이란에 대한 견제를 위한 상호 협력을 강화하고 있음.

○ 양국은 궁극적으로 JCPOA의 원천 폐기를 통한 이란의 고립 상태 복원을 바라고 있으며, 이것이 불가능할 경우 최소한 이란의 탄도미사일 개발에 대한 제한과 이란의 항구적인 비핵화를 바라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글로벌 도약의 성공파트너, 한국수출입은행 오경일 | 2018-06-14 15:45

Ⅱ. 미 재무부의 대 이란 경제제재 복원 일정 발표

1. 미 재무부, JCPOA 파기에 따른 대 이란 제재 복원 일정 공개

□ JCPOA 파기로 Secondary Sanction 포함 대 이란 경제제재 부활

○ 트럼프 대통령의 JCPOA 파기 선언에 이어 미 재무부는 그간 해제상태를 유지해온 대 이란 경제제재 복원 일정을 공개하였음.

○ 동 일정에 따르면, 이란과 거래하는 제3국의 기업, 개인에 대해 제재를 가하는 Secondary Sanction도 전면 부활될 예정임.

— Secondary Sanction의 부활은 JCPOA의 여타 당사국들은 물론 JCPOA 발효 이후 이란과의 무역·투자 관계를 재개해온 국가들의 반발을 초래할 것이며, 특히 이란산 원유를 수입하는 국가들의 불만이 증폭될 전망임.

○ 미 재무부는 JCPOA 파기 선언일(5월 8일)을 기점으로 90일이 경과하는 8월 6일 및 180일이 경과하는 11월 4일의 두 차례로 나누어 대 이란 경제제재를 부활시킬 계획임.

2. 미 재무부의 대 이란 경제제재 1·2차 복원 일정

□ 대 이란 경제제재 1차 복원 : 8월 6일

○ 미 재무부는 JCPOA 파기 선언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한 8월 6일에 다음의 대 이란 경제제재 조치를 복원(snapback)할 예정임.

— 이란의 미 달러화 매입 또는 취득에 대한 제재

— 이란과의 귀금속류 거래(금 포함)에 대한 제재

— 이란과의 금속류(알루미늄, 철강 등) 및 광물(흑연, 석탄 등), “통합적 산업 프로세스”에 사용되는 특정 소프트웨어 거래에 대한 제재

— 이란 리얄화의 “현저한 규모”의 매각/매입 거래, 또는 이란 리얄화를 사용하는 현저한 규모의 국외 펀드 또는 국외 금융계좌 유지에 대한 제재

— 이란의 국채 발행에 대한 제재: 이란 정부가 발행하는 국채의 매입 금지

— 이란과의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거래에 대한 제재

글로벌 도약의 성공파트너, 한국수출입은행 오경일 | 2018-06-14 15:45

□ 대 이란 경제제재 2차 복원 : 11월 4일

○ 미 재무부는 JCPOA 파기 선언일로부터 180일이 경과한 11월 4일에 다음의 대 이란 경제제재 조치를 복원(snapback)할 예정임.

— 이란의 항구 이용, 이란 선적의 선박 및 해운 부문에 대한 제재

— 이란 석유기업들로부터의 원유 및 석유제품 구매에 대한 제재

— 이란 중앙은행을 포함한 이란의 금융기관들과 거래하는 외국 금융기관들에 대한 제재

— 이란 중앙은행을 포함한 이란의 금융기관들 앞 금융 통신문 서비스(SWIFT) 제공에 대한 제재

— 이란과 관련된 해상보험, 보험 및 재보험 제공에 대한 제재

— 이란의 에너지 부문에 대한 제재

○ 아울러 미 재무부는 11월 5일에는 미국계 자본이 소유한 외국기업의 대 이란 거래 금지조치, JCPOA 발효 이전 제재대상이었던 이란 국적 개인들에 대한 제재 등도 복원할 예정임.

글로벌 도약의 성공파트너, 한국수출입은행 오경일 | 2018-06-14 15:45

Ⅲ. 유럽 기업들, 미국의 제재 부활로 이란에서 철수 검토

1. 프랑스 Total社, 미국의 Secondary Sanction 압박으로 이란의 South Pars 가스전 사업 철수 시사

□ Secondary Sanction 적용시 이란에서 철수하겠다는 입장 발표

○ 프랑스의 석유메이저인 Total社는 5월 16일 미국 정부의 Secondary Sanction 적용 예외를 인정받지 못할 경우 자사가 2017년 7월 수주한 이란의 South Pars 가스전 제11공구 프로젝트에서의 철수가 불가피하다고 발표하였음.

○ 동 프로젝트는 총투자액 48억 달러 규모로 Total社, 중국 국영석유기업(CNPC), 이란 국영석유회사(NIOC) 자회사 Petropars가 각각 50.1%, 30%, 19.9%의 지분을 출자하는 합작회사를 설립하여 추진 중임.

— 합작회사는 3년 간 제11공구를 탐사·개발하고 20년 간 천연가스를 생산할 계획이며, Total社는 1차로 10억 달러를 투자할 예정이었음.

○ 그러나 Total社는 Secondary Sanction의 예외적용을 받지 못하게 되면 미국 은행들을 통한 달러화 금융의 중단과 그로 인한 전 세계 영업의 차질, 미국 주주와 미국 내 사업의 상실에 직면하게 되어 동 프로젝트로부터의 철수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임.

— Total社에 의하면 자사의 금융 부문의 90% 이상에 미국 은행들이 관여하고 있으며, 미국 주주의 지분율은 30% 이상, 미국 내 자산은 사용자본액 기준 100억 달러 이상임.

2. Total社의 결정은 이란에 진출한 외국 기업의 사업 유지 여부 결정은 물론 JCPOA 유지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

□ 유럽 기업들의 대 이란 사업 철수 러시로 EU 및 유럽 국가들의 JCPOA 유지 동인(動因) 상실 우려

○ Total社의 South Pars 가스전 제11공구 프로젝트는 JCPOA 발효 후 최초로 이루어진 서방 에너지 기업의 대 이란 투자이며, 투자규모도 최대 수준으로 상징적인 의미를 지닌 프로젝트임.

글로벌 도약의 성공파트너, 한국수출입은행 오경일 | 2018-06-14 15:45

○ 따라서 JCPOA 발효 후 이란에 진출한 서방 기업들도 미국의 JCPOA 파기 발표 후 Total社의 대응방향을 일종의 바로미터로서 예의 주시해 왔음.

○ 실제로 세계 1위 해운사인 덴마크 Maersk Line의 유조선 부문인 Maersk Tankers는 5월 16일에 "11월 4일까지 이란 내 고객사와 계약을 단계적으로 감축한다"고 발표하였으며, 세계 2위 해운사인 스위스 MSC는 제재 부활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특정 화물에 대한 주문을 이미 받지 않는 것으로 알려짐.

○ 주요 해운사들의 대 이란 거래 중단은 원유수출을 거의 전적으로 유조선을 통한 운송에 의존하는 이란의 수출과 국가경제에 직접적인 타격으로 작용할 전망임.

○ 또한 유조선의 국제 운항에는 운송보험의 가입이 필수적이나, 미국 정부의 Secondary Sanction 적용은 유럽 보험회사들로 하여금 이란의 원유수출 관련 운송보험 제공을 꺼리게 만들 전망임.

— 유럽 선주상호보험(P&I) 클럽은 전 세계 유조선 운송보험의 95%를 점유하고 있으며, 2012년 7월 EU가 역내 보험회사의 대 이란 운송보험 제공을 금지하자 이란의 원유수출이 급감하고 마이너스 경제성장에 그쳤음.

○ 한편, 5월 18일 독일 은행 DZ Bank는 7월 1일부로 이란과의 금융거래를 중단한다고 발표한 데 이어 JCPOA 체결 후 이란에 진출한 첫 유럽계 은행인 오스트리아 Oberbank도 6월 13일 이란에서의 철수를 결정하였음.

— 2017년 9월 이란에서의 영업을 시작한 지 10개월 만에 미국의 對이란 제재 복원으로 인해 철수를 결정한 Oberbank는 금융거래 및 신용장 업무는 미국이 JCPOA 파기를 선언한 5월 8일 이전에 계약한 고객에 대해서만 가능하며, 지급거래는 11월 4일 이후 중단된다고 발표함.

○ 유럽 기업들이 Secondary Sanction 적용에서 예외를 인정받지 못하면 EU와 영국, 프랑스, 독일로서는 JCPOA를 계속 유지할 동인(動因)이 상실됨에 따라 궁극적으로 JCPOA의 붕괴를 초래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 JCPOA의 전면 붕괴는 이란의 핵개발 재개로 이어질 것이며, 이는 이스라엘과 사우디아라비아의 대 이란 공세 강화는 물론 이들 국가들의 핵개발 선언으로 이어져 중동 전역이 전쟁 위기에 처할 가능성이 고조될 것임.

글로벌 도약의 성공파트너, 한국수출입은행 오경일 | 2018-06-14 15:45

○ 미국의 JCPOA 파기 선언과 대 이란 제재 복원 일정 발표 후 현재까지 대 이란 직접투자 또는 이란과의 거래를 중단한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진 기업들은 에너지 부문의 ENI(이탈리아), BASF Global(독일), Inpex(일본), 항공 부문의 Boeing(미국), 철도 부문의 Siemens(독일), 자동차 부문의 Groupe PSA(Peugeot-Citroën, 프랑스) 등임.

○ 한편, 자동차 부문의 Renault(프랑스), 항공 부문의 Airbus(프랑스) 등은 대 이란 직접투자 또는 이란과의 거래에 대해 조건부로 계속하겠다는 (즉 상황 변화에 따라 중단 가능)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짐.

글로벌 도약의 성공파트너, 한국수출입은행 오경일 | 2018-06-14 15:45

Ⅳ. 미국, JCPOA 파기에 이어 고강도의 대 이란 제재 선언

1. 미국, 이란에 “최대의 압박” 전략 적용 선언

□ 폼페이오 국무장관, 이란에 “플랜 B” 제시하며 역대 최강의 제재 부과 위협

○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5월 21일 미국의 보수 성향 싱크탱크인 Heritage Foundation에서의 연설을 통해, 이란에 대한 12가지 요구사항을 담은 새로운 합의(플랜 B)의 체결을 주장하였음.

○ 폼페이오 장관은 이란이 12가지 요구사항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미국 정부가 “전례가 없는 역대 최강의 재정적 압박을 이란 정권에 가할 것”이라고 경고하는 한편, “이란이 변화한다면 미국은 모든 제재를 해제하고 외교관계를 복원하겠다”고 첨언하였음.

— 북-미 정상회담을 이끌어냈다고 자평하는 ‘최대의 압박’ 전략을 이란에도 적용하겠다는 미국 정부의 입장을 공개적으로 표명한 것임.

□ 이란과 EU는 폼페이오 장관의 ‘제의’를 공개적으로 거절

○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은 폼페이오 장관의 연설 내용 보도 직후 방송 연설을 통해 “미국이 내세우는 12가지 조건 중의 단 하나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선언하였음.

— 이란 외교부도 “폼페이오의 무례한 발언은 이란의 내정을 노골적으로 간섭하는 주권침해”라고 반발하였음.

○ 폼페이오 장관의 연설에 대해 페데리카 모게리니 EU 외교안보 고위대표는 성명을 통해 “미국의 JCPOA 복귀 외에 다른 대안은 없다”고 공언하였음.

글로벌 도약의 성공파트너, 한국수출입은행 오경일 | 2018-06-14 15:45

폼페이오 장관이 밝힌 이란에 대한 12개 요구사항

1. 국제원자력기구(IAEA)에게 **과거의 군사적 핵개발 프로그램에 대한 완전한 세부 사항을 공개**하고, 이를 **영구적 검증이 가능토록 폐기**할 것
2. **우라늄 농축(산업용, 연구용 포함)을 완전 중단**하고, **플루토늄 재처리 추진을 영구히 포기**할 것 (중수로 가동 중단 포함)
3. IAEA 사찰단에게 **이란 국내의 모든 지역에 대한 완전한 접근 및 사찰을 허용**할 것
4. **탄도미사일 개발을 중단**하고, 핵무기 탑재가 가능한 미사일의 발사 및 개발을 중지할 것
5. 이란에서 실종되었거나 현재 이란에 억류되었음이 확인된 미국과 그 우방국들의 시민들을 모두 석방할 것
6. **헤즈볼라**(레바논의 시아파 무장정파), **하마스**(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의 무장정파) 및 이슬람 극단 주의 무장조직들에 대한 **지원을 중단**할 것
7. 합법적인 이라크 정부를 지지하고, **이라크 내 시아파 민병대에 대한 지원 중단 및 무장해제**를 시행할 것
8. 예멘 내전에서 **시아파 후티 반군에 대한 지원을 중단**할 것
9. **시리아로부터 모든 군사력을 철수**시킬 것
10. 아프가니스탄의 탈레반과 알카에다 등 테러 조직들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고 알카에다 조직원들에 대한 은신처 제공도 중단할 것
11. 각종 민병대 조직들에 대한 **이란 혁명수비대의 지원을 중단**할 것
12. 중동 지역의 인근 국가들(이스라엘과 사우디아라비아를 의미)에 대한 위협적인 행동을 중단할 것

2. 미국 보수 강경파의 궁극적 목표는 이란의 체제 교체(regime change) 및 친미 정권 수립

□ 대 이란 압박 수위 강화의 진정한 목적은 이란의 체제 교체

○ 미국 정부 및 의회 내 보수 강경파는 이란에 대한 압박을 최대한으로 높여 민생이 피폐화되면 이에 불만을 품은 일반 국민들이 현재의 이슬람 공화정 체제에 반발하여 시민혁명을 일으키고, 미국이 이를 배후 조종하여 이슬람 공화정 체제를 붕괴시키고 친미 정권을 이란에 수립하는 체제 교체(regime change)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음.

글로벌 도약의 성공파트너, 한국수출입은행 오경일 | 2018-06-14 15:45

— 폼페이오 장관의 이란에 대한 12개 요구조건의 진정한 목적 또한 이러한 체제 교체의 달성임.

○ 그러나 미국이 리비아, 이라크 등 중동 국가들에서 추진한 체제 교체는 결과적으로 내전을 비롯한 혼돈과 파괴만을 낳았고, 이는 해당국 국민들의 반미 감정을 촉발하는 역효과만을 초래해 왔음.

— 미국의 보수 강경파에게는 역사상 외부의 압력에 의한 체제 교체 시도는 결국 실패로 끝났다는 사실에 대한 인식이 근본적으로 결여되어 있음.

□ 미국의 압박은 오히려 이란 내부의 결속력 강화로 이어질 공산

○ 이란은 1979년 이슬람 혁명 이후 40년 가까이 미국의 다양한 제재 속에서도 이른바 "저항경제" 구축을 통해 미국에 맞서 왔음.

○ 또한 시아파와 수니파로 분리되어 갈등과 분열을 빚음으로써 미국의 배후 조종이 가능했던 이라크와 달리 시아파가 절대 다수를 차지하여 종파주의에 기반하는 분열의 조장도 어려우며, 이슬람 국가로서 종교에 의한 단결심이 강력하여 미국의 압박은 오히려 이란 내부 단결을 강화시킬 전망임.

— 내부의 다양한 불만도 외세의 부당한 압력 앞에서는 오히려 상호 단결의 동인(動因)으로 변한다는 사실은 프랑스 대혁명[7] 이래 많은 국가들에서 관찰된 바 있는 공통된 현상임.

○ 굴욕적인 요구조건들을 받아들이면 경제적인 보상을 제공하겠다는 미국의 제안은 이란 국민 전체에게 오히려 모욕으로 간주됨.

□ 미국의 무리한 대 이란 체제 교체 시도는 중동 지역에서의 전쟁 발발의 위험만을 높일 것으로 우려

○ 현재 미국 정부의 태도는 제1차 세계대전 발발 전 오스트리아가 세르비아에 내정간섭적 조건의 이행을 요구함으로써 상대방의 거부를 유도하고, 이를 빌미로 전쟁을 개시한 상황[8]을 연상시킴.

7) 프랑스 대혁명 직후 혁명을 주도한 세력들 간에 분열이 발생하였으나, 국왕 루이 16세를 도와 구체제(ancien regime)의 부활을 도모한 인근 국가들의 침략 위협이 노골화되자 분열이 진정되었고, 루이 16세를 비롯한 왕족들은 외세를 끌어들여 프랑스에 대한 침략을 꾀한다는 반역죄로 처형되었음.

8) 오스트리아의 황태자 프란츠 페르디난트 대공 부부가 1914년 6월 28일 당시 오스트리아의 지배하에 있던 보스니아의 사라예보에서 세르비아계 극우파 청년에게 암살당한 "사라예보 사건" 직후, 전부터 보스니아의 영유권 문제로 발칸반도에서 세르비아와 갈등을 거듭하던 오스트리아는 정부 내 강경파의 주도로 7월 23일 세르비아에 대해 내정간섭적인 성격이 명백한 10개 세부항목의 이행(소위 "7월 최후통첩")을 요구함으로써 의도적으로 세르비아의 거부를 유도하고 이를 빌미로 7월 28일 선전포고를 감행,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였음.

글로벌 도약의 성공파트너, 한국수출입은행 오경일 | 2018-06-14 15:45

— 강경파의 주도로 상대방에 대해 수용 불가능한 수준의 내정간섭적 조건을 요구하는 것은 향후 상대방에 대한 초강경 제재조치 부과(경우에 따라서는 군사적 옵션까지 포함)의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의도로 추정됨.

○ 따라서 향후 미국과 이란 간 협상을 통해 JCPOA가 개정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며, 미국은 대 이란 경제제재를 이전보다 대폭 강화하여 복원하고, 이란은 이에 맞서 역내에서 군사적 행동의 수위를 높여 중동 지역에서의 전쟁 발발 위험이 고조될 것으로 전망됨.

글로벌 도약의 성공파트너, 한국수출입은행 오경일 | 2018-06-14 15:45

Ⅴ. 향후 전망

1. 이란은 물론 중동 전역의 정치·경제적 불확실성 고조

□ 최악의 시나리오는 걸프 지역에서의 전쟁 발발

○ 미국의 JCPOA 파기로 인한 최악의 시나리오는 Secondary Sanction을 포함한 미국 정부의 대 이란 제재 부활에 반발한 이란이 핵개발 재개를 선언하고, 이에 이스라엘이 사우디아라비아와 손잡고 이란 내 핵시설을 폭격하여 중동 전역이 전화(戰火)에 빠져드는 상황임.

— 이스라엘은 레바논의 시아파 무장정파 헤즈볼라, 시리아의 알 아사드 정권,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의 하마스 등 자국에 적대적인 정부 및 세력에 대한 지원을 계속하는 이란을 역내 최대의 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 이란이 탄도미사일의 사거리를 자발적으로 2,000km 내로 제한하여 미국 본토가 표적이 될 가능성이 없음에도 미국 정부가 중단을 압박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사정권 내에 들어가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됨.

○ 강경파가 행정부를 장악한 이스라엘은 이전부터 JCPOA가 이란으로 하여금 핵무기 개발을 위한 시간을 벌어주는 최악의 합의라고 주장하며 이란 내의 핵시설에 대한 자국 공군의 선제 폭격을 거론하는 등 전쟁도 불사하겠다는 무모한 태도를 견지하고 있음.

○ 다만, 시리아 내전이 깊이 개입 중인 러시아가 이란-이스라엘 간의 전면전 비화를 강력히 반대하고 있어, 양국 간의 군사적 충돌은 주로 시리아에서의 대리전 양상(이란의 지원을 받는 레바논 헤즈볼라와 이스라엘 정규군 간의 상호 공습 등)을 띠게 될 것으로 전망됨.

□ Secondary Sanction 부활로 이란 경제 전반에 타격 불가피

○ 이란 경제는 JCPOA 발효로 회복세가 본격화되면서 2017년 4.3%의 성장을 기록하였으나, 미국의 Primary Sanction 및 對이란 거래시 미 달러화 사용 금지조치 유지로 인해 외국인투자 유치규모가 기대에 못 미치고, 경제성장 효과가 민생 개선에 즉각 반영되지 않아 일반 국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음.

— 지난 1월 초의 전국적인 반정부 시위도 JCPOA 발효 이후에도 계속되는 취업난과 생활고에 불만을 품은 젊은 서민층의 주도로 발생하였음.

글로벌 도약의 성공파트너, 한국수출입은행 오경일 | 2018-06-14 15:45

○ JCPOA 파기에 따른 미국 정부의 Secondary Sanction 전면 부활은 제3국들로 이란과의 거래를 중단하거나 재고토록 함으로써 이란 경제 전반에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됨.

— IMF는 World Economic Outlook(2018.4월)에서 이란 경제가 2018년 4.0%의 성장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하였으나, 미국의 JCPOA 파기에 따른 대 이란 경제제재 부활로 이란 경제의 성장전망이 매우 불투명해지고 있음.

<표 1> 이란의 주요 경제지표 (2014~18년)

구 분	2014	2015	2016	2017e	2018f
경제성장률(%)	3.2	−1.6	12.5	4.3	4.0
재정수지/GDP(%)	−1.1	−1.8	−2.3	−2.3	−1.4
소비자물가상승률(%)	15.6	11.9	9.1	9.9	12.1
경상수지/GDP(%)	3.2	0.3	4.0	4.3	7.0

자료: IMF World Economic Outlook(2018.4월)

□ 미국의 JCPOA 파기는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리스크와 이란 원유 수출 불확실성 고조로 이어져 국제유가 급등 및 세계경제 불안정 초래 우려

○ 경제제재 해제 후 이란의 원유수출 증가는 국제유가 하락세 지속에 일조한 것으로 분석되나, 이후 산유국 감산 합의 및 연장에 이어 미국의 JCPOA 파기에 따라 최근 국제유가는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음.

— 뉴욕상업거래소(NYMEX)의 두바이유 배럴당 선물거래가격은 JCPOA 타결 직후인 2016년 1월 22일 25.56달러로 최근 3년 간 최저 수준을 기록하였으나, 이후 산유국 감산 합의로 상승세를 거듭하다 미국의 JCPOA 파기에 따라 금년 5월 25일 74.98달러로 최근 3년 간 최고 수준을 기록하였음.

<그림 1> 최근 3년 간 두바이유 배럴당 가격 추이

자료: NYMEX (조회기준일: 2018.6.14)

글로벌 도약의 성공파트너, 한국수출입은행 오경일 | 2018-06-14 15:45

○ 미국의 JCPOA 파기로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증폭되는 한편 미국의 대 이란 제재 복원에 따른 이란의 원유수출 규모 유지에 대한 불확실성 고조로 국제유가가 한동안 상승세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로 인한 세계경제의 불안정성 가중이 불가피할 전망임.

— 산유국들은 국제유가 급등에 따른 재정·경상수지 개선 및 경제성장의 이익을 얻겠으나, 석유·천연가스 등 에너지자원을 수입에 의존하는 신흥국은 소비자물가상승률 상승, 상품·경상수지 악화 등 경제에 필연적인 악영향이 미칠 것으로 우려됨.

— 산유국들 중에서도 걸프 지역 국가들은 이란과 이스라엘(또는 사우디아라비아) 간의 군사적 충돌 위험 고조에 따른 역내 불안정 심화로 외국인 투자 유치 등에 지장을 받을 가능성이 존재함.

○ 이란과 이스라엘 간 군사적 충돌은 국제유가 폭등을 초래하고, 이는 비산유 개도국의 에너지 비용 급상승으로 인한 소비자물가 급등과 수출상품의 가격경쟁력 저하로 이어지며 경상수지와 대외지급능력의 동반 악화를 초래하는 악순환을 유발하여 전 세계 경제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됨.

○ 어떤 경우든 미국의 JCPOA 파기는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리스크를 증폭시켜 국제유가 급등을 초래하고, 이는 개도국들을 중심으로 하는 세계 경제에 대한 악영향으로 이어져 최소한 단기적으로 세계경기 회복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됨.

2. 우리 기업들도 대 이란 사업 전면 재검토 불가피

□ 미국의 JCPOA 파기는 한-이란 교역·투자 관계에도 암운

○ 미국의 JCPOA 파기 및 Secondary Sanction 부활은 JCPOA 발효 이후 회복 추세를 보였던 한-이란 교역에도 심각한 타격을 입혀 전면적인 위축이 불가피할 전망임. 구체적으로는 대 이란 제재의 해제 논의가 시작되기 전인 2013년 수준의 상황으로 돌아갈 것으로 우려됨.

— 우리나라의 이란산 원유 수입규모도 JCPOA 발효 이전과 마찬가지로 미국 정부의 요구에 따라 계속 감축하게 될 것으로 전망됨

글로벌 도약의 성공파트너, 한국수출입은행 오경일 | 2018-06-14 15:45

〈표 2〉 한-이란 무역액 추이

단위: 백만 달러

구 분	2014	2015	2016	2017	2018.1~4월
수 출	4,162	3,731	3,717	4,021	1,100
수 입	4,578	2,367	4,648	7,989	2,569

자료: 무역협회

□ 미국의 대 이란 경제제재 복원 일정(8월 6일, 11월 4일)에 맞추어 기존 거래의 정리, 대금 회수 등 각종 조치 불가피

○ 8월 6일부터 이란과의 귀금속류, 일반 금속류(알루미늄, 철강 등) 및 광물(흑연, 석탄 등), 특정 소프트웨어 거래, 이란 리얄화의 "현저한 규모"의 매각/매입 거래, 이란 리얄화를 사용하는 국외 금융계좌 유지, 이란과의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거래 등에 대한 제재가 부활될 예정임.

○ 또한 11월 4일부터 이란의 에너지 부문 및 해운 부문, 이란 석유기업들로부터의 원유 및 석유제품 구매, 이란과 관련된 보험(해상보험 포함) 및 재보험 제공, 이란의 금융기관(이란 중앙은행 포함)과 거래하는 외국 금융기관 등에 대한 제재가 부활될 예정임.

○ 따라서 이란에 투자하였거나 이란과 수출거래 중인 우리 기업들은 미국으로부터 Secondary Sanction의 예외를 인정받지 못할 경우 상기 일정에 맞추어 기존 거래의 정리, 대금 회수 등 각종 대응조치를 취하는 것이 불가피하며, 현재 이란과의 거래를 추진 중인 기업들은 전면 재검토가 불가피한 상황임.

○ 다만, JCPOA 타결 이후에도 우리 기업들의 이란 시장 진출은 미국의 Primary Sanction 유지로 인한 대 이란 거래시 미 달러화 사용 금지의 영향, 외국인투자에 대한 이란 정부의 까다로운 요구조건(제조업 부문의 현지기업 합작 기술이전 강요 등)으로 인해 당초 기대에 못 미치는 수준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글로벌 도약의 성공파트너, 한국수출입은행 오경일 | 2018-06-14 15:45

<참고자료 1>

JCPOA('15.7.14)에 따른 합의이행(제재해제) 일정

■ **Finalisation Day ('15.7.20) : 기 경과**

- **UN 안보리 결의안 통과일**
- (결의안 주요 내용) ①이란 제재에 관한 UN 안보리 결의안 해제, ②이란의 **JCPOA에 대한 중대한 불이행이 있을 경우 제재 결의안 '복귀'**

■ **Adoption Day ('15.10.18) : 기 경과**

- 협상국간 합의에 따른 **JCPOA 효력 발생일** (채택일로부터 90일 이내)

■ **Implementation Day ('16.1.16) : 기 경과**

- IAEA는 이란이 **핵무기 개발과 무관함을 확인 완료**

  * IAEA는 '15.10.15자로 사찰 완료 ⇨ IAEA 특별 집행이사회, **'15.12.15자로 사찰보고서 승인 : 2009년 이후 이란이 핵무기 개발을 중단했음을 확인**

- **미국**은 제재 관련 **법률**은 **'적용 유예'**, 제재 관련 **행정명령 일부 조항 해제**

  · **특정 제재대상자(부속서 II, 별첨 3) 지정 해제** : Bank Mellat, Bank Melli, Bank Tejarat, IDRO, IRISL 등 정부 및 민간 주요 경제주체 대부분

- **UN 안보리**는 기존 **제재 결의안 해제** (단, **'복귀' 가능**)
- EU는 제재 관련 규정들의 해제(terminate)·개정(amend)·유보(suspend) 조치

■ **Transition Day ('23.7월 예상)**

- Adoption Day로부터 **8년 후**, 또는 그 이전이라도 IAEA에 의해 이란의 모든 핵물질이 평화적 용도로 사용되고 있음을 평가하는 날
- **미국**은 **법률에 따른 제재해제**를 위한 **법률개정 조치** 이행

  · 특정 제재 대상자(부속서 II, 별첨4) 지정 해제 : 핵 개발에 직접 관련된 대상

  * 단, **이란혁명수비대(IRGC)**와 관여된 **Tidewater** 등은 **해제대상에서 제외**

■ **UN Termination Day ('25.7월 예상)**

- Adoption Day로부터 **10년 후**, 이란 **제재 관련 결의안이 '복귀'되지 않으며, 모든 제재가 해제됨**을 선언하는 날

〈참고자료 2〉

UN의 對이란 경제제재 결의안 연표

2006. 7월	o UN 안보리 결의안 1696호 - 이란에 우라늄 농축·재처리 작업 중단 및 전략물자(핵, 미사일) 이전 방지 촉구
2006.12월	o UN 안보리 결의안 1737호 - 이란에 우라늄 농축·재처리 작업 중단, IAEA에의 협조 요구 - 對이란 핵개발 관련 물질·기술 금수조치 - 이란의 핵개발 및 미사일개발 관련 주요 인사 12명, 10개 기업의 해외 자산 동결조치 (기업은 별도의 상업적 제재조치 추가)
2007. 3월	o UN 안보리 결의안 1747호 - 이란에 대한 무기 수출 금지 및 금융대출 제한 - 이란의 해외자산에 동결조치 대상에 13개 기업 추가 (이란 핵개발 또는 이란 혁명수비대와 관련된 기업들)
2008. 3월	o UN 안보리 결의안 1803호 - 이란의 해외자산 동결 대상 확대 - 민간용과 군용으로 모두 사용되는 품목의 對 이란 수출 금지 - 회원국들에게 이란 은행들의 활동 감시, 이란 국적 선박·항공기 조사, 이란 핵개발 관련 인사들의 자국 내 활동 감시 등 촉구
2008. 9월	o UN 안보리 결의안 1835호 - 앞서의 對이란 결의안(1696호, 1737호, 1747호, 1803호) 재확인
2010. 6월	o UN 안보리 결의안 1929호 - 이란의 미사일 개발 금지 - 對이란 전차, 전투기, 헬리콥터 등 무기 수출 금지 - 이란 핵개발 관련 인사들의 여행 금지 - 이란 혁명수비대와 이란 국영 해운회사의 해외자산 동결 - 회원국들에게 이란행 화물선 조사, 핵개발과 관련된 이란 선박의 입항 금지, 이란 은행들의 자국 내 지점 개설 금지 등의 제재조치 동참 촉구
2011. 6월	o UN 안보리 결의안 1984호 - 對이란 제재 위원회 산하 전문가위원회(panel of experts)의 위임 기간을 1년 연장
2012. 6월	o UN 안보리 결의안 2049호 - 對이란 제재 위원회 산하 전문가위원회(panel of experts)의 위임 기간을 13개월 재연장

〈참고자료 3〉

JCPOA('15.7.14)에 따른 미국의 경제제재 적용 유예/해제 내용

경제제재 적용 유예 (금융)	- 이란중앙은행을 포함한 이란 은행과의 금융 거래 - 이란 리알화를 사용한 거래 - 이란이 개입하는 중개무역 - 이란 해외보유 자산 이전 허용 - 이란 국채 매입 - 이란 금융기관에 대한 금융 통신문 서비스(SWIFT) - 보험, 재보험 제공 - 이상의 사항과 유관한 거래
경제제재 적용 유예 (에너지 등)	- 이란의 원유 수출 - 이란의 석유, 가스, 석유화학 분야에 대한 투자 - 이란산 석유, 석유화학제품, 천연가스 수입 - 이란으로의 정유, 석유화학 제품 수출 - 이란 에너지 분야 관련 거래 - 이란 해운, 조선, 항만 분야 거래 - 금, 귀금속 거래 - 알루미늄, 철강 및 기타 특정 물질, 소프트웨어 거래 - 이란 자동차 분야 거래 - 이상의 사항과 유관한 거래
경제제재 해제 (행정명령)	• 대통령명령 제13590호 - 석유자원개발 관련 재화 및 서비스 제공 금지 - 석유화학제품 생산 관련 재화 및 서비스 제공 금지 - 이란중앙은행 포함 이란 금융기관 자금세탁우려대상 지정 • 대통령명령 제13622호 - 이란의 석유화학제품 수입 금지 - 석유 또는 석유화학제품 구매 관련 금융거래에 관여한 외국 금융기관 제재 • 대통령명령 제13645호 - 리알화 관련 금융거래에 관여한 외국 금융기관 제재 - 자동차 업계에 사용될 수 있는 재화 및 서비스 제공 금지 • 대통령명령 제13628호 제5조, 제7조, 제15조 - 정유제품 생산 및 수입 능력 확대에 기여할 수 있는 재화 등 제공 금지 - 이란에 대한 정유 제품 수출 금지

글로벌 도약의 성공파트너, 한국수출입은행 오경일 | 2018-06-14 15:45

제재대상자 지정 해제	• Annex II, Attachment 3의 제재 대상자에 대한 지정 해제 - 합의 이행일(Implementation day)로부터 SDN 등 지정 해제 - Bank Mellat, Bank Melli, Bank Tejarat, IDRO, IRISL, Iran Air 등 정부 및 민간 영역의 주요 경제주체 대부분 • Annex II, Attachment 4의 제재 대상자에 대한 지정 해제 - 핵개발에 직접 관련된 개인 및 단체로, Transition day에 재제 해제 • 단, 이란혁명수비대(IRGC)와 관련된 Tidewater, Oriental Oil Kish, Ghorb Nooh 등은 제외
항공 관련 거래 허용	- 이란에 대한 민간 항공기, 관련 부품 및 서비스 공급 허용 - 미국인의 소유 또는 지배를 받는 외국기업은 거래시 면허가 필요
주정부 제재 관련	• 주법이 제재 적용 중단 및 해제에 반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을 경우, 연방 정부는 JCPOA 이행을 위한 필요 조치를 취함 - 연방 정부는 미국 정부의 변경된 정책이 반영되어 주법상 제재 적용 중단, 해제가 이루어지도록 주 정부를 설득할 의무

글로벌 도약의 성공파트너, 한국수출입은행 오경일 | 2018-06-14 15:45